

#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경택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9월 06일

발 의 자 : 송경택, 강석주, 김경훈,  
김규남, 김영옥, 김영철,  
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  
김종길, 김춘곤, 김형재,  
김혜지, 문성호, 박성연,  
박영한, 서호연, 소영철,  
신동원, 옥재은, 유정인,  
윤기섭, 윤영희, 이경숙,  
이봉준, 이은림, 이종태,  
최민규, 최진혁 의원(2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의 관리·감독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조정하고, NPO지원센터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, 위원회 운영방식 효율화 및 당연직 위원 현행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·조정 기능을 심의·자문으로 조정  
(안 제13조제1항~제4항)
- 나.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관련 부서장 자료제출·출석 등 요구를 협조요청으로 완화(안 제13조제4항)
- 다.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정기회 개최횟수를 연4회에서 연2회로 조정  
(안 제16조제3항)

- 라. 센터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승인을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(안 제22조제3항, 제24조)
- 마. NPO지원센터 명칭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(안 제20조, 제21조)
- 바. 당연직 위원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현행화(안 제14조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하고,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심의·조정”을 “심의·자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심의·조정”을 “심의·자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의 “분야별 정책의”를 “연도별 시행계획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자문·조정·심의의”를 “심의·자문의”로 하며, “마련해야 한다”를 “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심의·조정과”를 “심의·자문과”로 하며, “관련 부서장에게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,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”를 “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”를 “시민사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4회”를 “2회”로 한다.

제5장 제목 중 “NPO지원센터 등”을 “공익활동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”를 “공익활동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각 센터는”을 “센터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·설비 등의 제공
3.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·훈련 등 인재육성
4.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·컨설팅
5.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
6.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
7.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·제공
8.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
9.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2조제3항 중 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”를 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위원회의”를 “시장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기존에 설치된 센터는 협약 만료 시 까지 그 명칭은 유지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기본계획 수립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~10. (생 략)</p> <p><u>11. 자치구의 시민사회 소통·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·지원 체계 구축 방안</u></p> <p>12. (생 략)</p> <p>제13조(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)</p> <p>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<u>심의·조정</u>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·조정</u>한다.</p> <p>1.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2.~7.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위원회의 <u>자문·조정·심의</u>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, 이를 위한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<u>마련</u>해야 한다.</p> <p>④ 위원회는 <u>심의·조정과</u> 정책협</p>	<p>제7조(기본계획 수립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)</p> <p>① ----- -----<u>자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 <u>심의·자문</u>--.</p> <p>1. ----- <u>연도별 시행계획의</u> ----- -----</p> <p>2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심의·자문</u> <u>의</u> ----- ----- ----- --- <u>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-----<u>심의·자문과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의를 위해, <u>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,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	<p>----- <u>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4조(구성) ② <u>당연직 위원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</u></p>	<p>제14조(구성) ② ----- <u>시민사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.</u></p>
<p>제16조(운영)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.</p>	<p>제16조(운영) ③ ----- ----- ----- 2회 -----, -- ----- -----.</p>
<p>제5장 서울특별시 <u>NPO지원센터 등</u></p> <p>제20조(설치)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<u>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장 ----- <u>공익활동지원센터</u></p> <p>제20조(설치) ----- ----- <u>공익활동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1조(기능) <u>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</li> <li>2. <u>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·설비 등의 제공</u></li> <li>3. <u>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</u> 관련되는 <u>교육·훈련·국내외 연수 등</u></li> </ol>	<p>제21조(기능) <u>센터는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시민공익활동의</u> ----- -----</li> <li>3. <u>시민공익활동과</u> ----- ----- <u>교육·훈련 등</u> -----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인재육성</p> <p>4. <u>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·컨설팅</u></p> <p>5.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</p> <p>6. <u>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·연구</u></p> <p>7. <u>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정보의 집적·제공</u></p> <p>8. <u>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조성</u>과 <u>운영</u></p> <p>9. 그 밖에 <u>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</u></p> <p>제22조(센터의 위탁)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<u>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제24조(센터의 운영)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<u>위원회</u>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	<p>-----</p> <p>4. <u>시민공익활동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</u></p> <p>7. <u>시민공익활동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8. <u>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사업</u></p> <p>9. ----- <u>시민공익활동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2조(센터의 위탁) ③ -----</p> <p>----- <u>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제24조(센터의 운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시장의</u> -----</p> <p>-----.</p>